

2018년

밴쿠버 성 김대건 성당 예산관리 지침서



목차

주임 신부님 재정 운영 방침.....	4
2017 년 예산 편성 및 운영 지침의 개선 방향.....	6
2018 년 본당 (공동체) 예산 관리 일반 지침.....	8
가. 예산관리 기본 사항.....	8
나. 예산 편성 지침.....	9
다. 예산 집행 지침.....	10
지역 공동체 예산 편성 지침.....	12
가. 지역 공동체 재정적 자율을 위한 운영 방침.....	12
나. 2018 년 공동체 예산 관리 일반 지침.....	13
부서 및 단체 예산편성지침 (지역 공동체 포함).....	14
가. 사목회 (제 단체가 없는 부서).....	14
나. 구역부.....	14
다. 선교부.....	15
라. 신심단체부.....	15
마. 전례부.....	15
바. 여성부 (성모회).....	16
사. 청소년부.....	16
아. 청년부.....	17
자. 시니어 사목부.....	18
차. 사회복지부.....	18
카. 기타.....	19

주임 신부님 재정 운영 방침

본당 사목구는 교구장 주교의 권위 아래 사목구 주임에게 위탁되어 고정적으로 설정된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이에 대한 설립과 변경, 폐쇄에 대한 권한은 사제평의회 의견의 들은 교구장 주교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당 사목구는 그 설립 자체로 법인 자격을 가집니다. 결과적으로 본당 사목구 주임은 모든 법률적 업무에 있어서 법 규범에 따라 본당 사목구를 대표해 재산을 관리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신자들의 정성 어린 재화 봉헌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교회는 교회 스스로가 가지는 고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자발적인 봉헌을 촉구하고 신자들 역시 교회운영의 주체로서 교회 운영에 필요한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다.

이렇게 소중히 봉헌된 재화를 “신자들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 또는 “애덕의 실천”¹과 “본당 운영”을 위하여 쓰여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법(제239조 1항; 제494조; 제532조; 제537조; 제1279조)은 본당 사목구 재산 관리의 일차적 책임자는 주임사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당의 소중한 재화가 그 목적과 의미에 맞게 사용되도록 보살피는 것이 주임사제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이런 책임을 갖는 주임사제로서 우리 공동체의 재정이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모양새로 관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현재 우리 공동체의 재정현황을 살펴보면 아네스 공동체 분당과 관련한 재정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교육관 부채와 늘어나는 관리비로 인해 재정적인 부담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또한 공동체 및 단체별 재정 및 예산 집행도 마땅한 규칙과 제재가 없어 과도한 지출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회의 재화는 신자들의 영적유익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사목적인 도움을 주지 못할까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예산편성 특임위를 구성하여 우리 본당의 재정이 올바르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내년부터는 통일된 양식으로 예산편성이 올바르게 이루어져, 본당 재화의 운용이 “사목적인 효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¹ “애덕의 실천” (Practicing a Charity): 우리의 의지를 오로지 하느님의 뜻에 결합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데 있습니다. 애덕을 실천하여 거룩해집시다. ‘하나의 마음, 하나의 영혼’이 되도록 사랑하고 동정심을 가집시다.

이에 따라 주요한 재정 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 교회법 제1287조 2항에 의거 "관리자들은 신자들이 교회에 봉헌한 재산에 대하여 개별 법으로 정한 규범에 따라 신자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실천 할 것입니다.
- 나. 예산편성 지침가운데 식대나, 간식비를 교육이나 피정, 사목적인 도움을 주는 비용으로 재구성 하고자 합니다.
- 다. 공동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공동체 재정적 자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재정적인 독립이 아닌 "자율성"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 라.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분과 및 단체 복음화 계획서와 이에 따른 예산편성(연중 계획서)을 책자로 만들어 운용하고자 합니다.
- 마. 단체별 활동과 예산안을 검토하여 자체적인 운용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바.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특임위"를 운용하여 그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17년 11월

주임신부 신현만 시몬

2017 년 예산 편성 및 운영 지침의 개선 방향

1) 체계적인 예산 승인 절차 마련

기존 우리 공동체는 각 단체별 예산 편성과 취합에 있어 검토 및 승인절차가 미흡하여 예산신청과 사용에 있어 일관성있게 운영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주임 사제의 사목적 방침에 따라 예산을 신청하고 일관성 있게 운용되기 위하여 체계적인 예산 지침과 승인 절차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영적 유익을 위한 효율적 지출 방안 모색

예산 편성이 행사를 위한 제반 비용보다는 신앙활동에 주된 목적을 두고 편성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3) 현 실정에 부합하는 세부 지침 마련

예산 지침은 본당과 각 공동체별, 단체별, 분과별,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기준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구에서 지원받아야 하는 단체활동, ME, 꾸르실료, 초이스, 말씀 봉사 등은 자체적으로 운영되기에 이에 따른 세부지침도 요구됩니다.

4) 지역 공동체의 특성 이해

각 공동체의 담당신부 운영은 공동체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목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입니다. 바오로 공동체는 청년들이 차지하는 수가 본당과 비등하며, 베드로 공동체는 상대적으로 유학생 부모들과 PREP 아이들이 주된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예산 편성 지침서는 공동체 담당 신부 운영 방식에는 부합하지 않음으로 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별도의 "공동체 예산 지침"이 요구됩니다.

5) 예산 편성 기초자료 마련

본당과 공동체에서 각 부서, 단체별로 분과장이나 단체장 변동시에 인수인계가 미흡하여 예산 사용과 신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의 행사들을 평가하여 행사의 규모와 참가자 수, 분기별 본당의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예산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매년 행사들을 재평가하여 익년의 예산 지침서를 수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봅니다.

6) 통일된 예산 양식 마련

각 부서별, 단체별 예산 계획을 수령한 결과, 서로 각기 다른 양식으로 제출하여 1년 예산 계획안을 이해하고 취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관된 예산양식이 요구됩니다.

2018 년 본당 (공동체) 예산 관리 일반 지침

가. 예산관리 기본 사항

① 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하는 일정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연중 계획서 및 복음화 계획서

부서 및 단체는 매 11월 31일까지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거한 연중계획서(복음화 계획서) 및 예산편성표를 사무실로 제출하고, 각 부서장 및 재정부장의 검토를 받아 주임사제의 승인을 받는다. 이때, 재정부장 또는 재정분과장은 단체별 예산안이 예산편성 지침서와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임사제(담당사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복음화 계획서 작성

- 제 분과 및 단체는 사목방침에 따라 행사를 주임사제(담당사제)의 사목적 방침에 준하여 기획하고, 본당의 재화가 사목적 유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복음화 계획서를 작성한다.
- 복음화 계획서는 부록에 마련된 표준화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 제 분과 및 단체별 연중계획은 복음화 계획서를 토대로 작성 시행한다.

④ 제출된 각 분과 및 단체의 복음화 계획서와 연중계획서는 부록을 포함하여 통합 정리한 후 책자로 비치한다. (사목회)

⑤ 본당의 재정공개 의무

본당(공동체)의 재정은 1년에 1회이상 신자들에게 공개하되(교회법 제 1287 사제 사목생활에 관한 규범 82항), 특별한 사목적 판단에 따라 주임사제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⑥ 사목회 재정관리 참여

본당 재정 관리의 의사결정에 투명한 관리와 통제를 위하여 재정과 관련한 지출결의서, 전표, 월계표 등 집행 과정에 재정부장과 주임사제(담당신부)의 결재 과정이

있어야 한다. 특별한 사목적 판단에 따라 주임사제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⑦ 성당 내 판매 수입 처리

성물방 및 제 단체 판매이익금 그리고 펀드레이징 등 성당 내 모든 판매 수입은 본 당회계에 입금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펀드레이징 기금의 수입 및 미 지출분 등의 현황은 각 단체별 및 공동체 사무실에서 관리한다. 본당 사무실에서는 청구된 금액 집행처리를 관장한다.

⑧ 제단체 운영을 위한 구성원들의 회비는 자체 관리하되, 회계장부를 구비하고 분기별로 지도사제의 확인을 받는다.

⑨ 제분과 및 단체별 연간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정보는 소임 변경 시 후임 임원에게 인계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나. 예산 편성 지침

- ① 본당 수입예산은 신자들의 일반 봉헌금(교무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특별헌금, 건축헌금, Project Advance, 기타 목적헌금 등이 있다.
- ② 본당 재정에 갑작스런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분기별로 예산을 재조정 할 수 있다.
- ③ 본당의 재정방침은 밴쿠버 대교구의 지침을 따르며, 본당 예산지침은 “공동체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 ④ 각 단체 예산편성은 자립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부서 및 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을 준수한다.
- ⑤ 본당의 표준화된 양식에 의거하여 예산편성표를 작성한다. 행사참가비와 회비등 자체수입도 전체 예산 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며, 예산 편성 시 총 소요금액은 자체 예산과 본당지원금액으로 분리 표기하여야 한다.
- ⑥ 제 단체에서 매 월 또는 매 주 정기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식비(식사 및 간식)는 자체회비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청소년, 청년단체의 경우 “청소년·청년 지침”에 따른다.) 단, 행사진행을 위한 식비 및 간식비는 “부서 및 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하여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편성 가능하다.
- ⑦ 제 단체의 영적 유익을 위한 활동 외에 친교나 친목도모를 위한 비사목적의 활동에

는 예산을 배정할 수 없다. 단, 공동체 전체를 위한 친교예산은 주임신부와 담당신부의 승인을 통해 예산을 배정할 수 있으며, 주임사제(담당사제)의 사목적 판단과 방침에 따른다.

- ⑧ 개인 영성 생활의 이익을 위한 외부교육 참가비는 자체적으로 조달하며,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한 외부교육 참가비는 본당 예산을 신청할 수 있다.
- ⑨ 공동체 전체를 위한 외부강사 초청은 교통비와 강사료를 예산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연중예산편성에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 ⑩ 제 단체별 외부강사를 초빙해야 할 경우, 자체 경비로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임사제의 판단에 따라 일부 지원이 가능하다.
- ⑪ 본당의 시설유지 또는 공동체 유익을 위한 사목회 부서별 예산편성은 본당 지원 가능하다.
- ⑫ 사목회 각 부서별 예산신청은 그 목적과 형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각 분과별 중복된 형식의 행사를 협의하여 조정한다.
- ⑬ 성당 내 판매 이익금의 본당 입금율은 매년 주임사제의 결정에 의한다.

다. 예산 집행 지침

① 정기 지출

(ㄱ) 매월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본당의 인건비 및 경상비와 관련한 내용은 주임사제의 지도를 따른다.

(ㄴ) 봉헌금의 처리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신자들이 바친 봉헌금은 오직 그 목적대로만 사용될 수 있다.”(교회법 제 1267조)에 따라 각종 봉헌금은 신자들의 봉헌목적대로 처리하고, 특별헌금은 특정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한다.

(ㄷ) 수입·지출 총액 처리

각종 헌금 및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회계처리의 원칙에 따라 수입과 지출이 분리되어 본당회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② 예산 및 결산

- (ㄱ) 예산신청서와 지출결의서는 본당의 양식을 준수하며, 제분과장, 재정부장(분과장), 주임사제(담당신부)의 승인과 확인을 받는다.
- (ㄴ) 예산신청서는 집행일 최소 2주전 승인을 받아 사무실에 제출한다.
- (ㄷ) 지출결의서는 행사 시행 후 2주내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 사무실에 제출한다.

③ 예산 수령

- (ㄱ) 예산이 초과된 금액에 관해서는 주임사제(담당사제)에게 보고하고 따로 승인을 받아 추가 예산을 집행한다.
- (ㄴ) 예산 집행 이후 잔여기금은 자체기금에 상관없이 본당에 상환한다.

④ 기타

- (ㄱ) 주임사제의 사목적 판단에 따라 예산집행이 미루어 질 수 있다.
- (ㄴ) 예산 편성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행사기획 및 예산신청은 주임사제(담당사제)의 사전 승인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 (ㄷ) 소액의 비품이라 하더라도 본당에서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물품은 비품계정으로 처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하지 않거나 폐기 처리해야 할 비품에 대한 비용은 또는 사무실에서 처리한다.
- (ㄹ) 분실된 영수증에 관해서는 사무실에 문의하여 확인한다.

지역 공동체 예산 편성 지침

가. 지역 공동체 재정적 자율을 위한 운영 방침

- ① 지역 공동체의 재정적 자율은 재정적 독립이 아닌, 지역공동체 특성에 따른 사목적인 배려로 이해되어야 한다. 때문에 지역공동체의 재정적 자율에 대한 모든 권한은 담당 사제가 아닌 주임사제에게 있다.
- ② 지역 공동체의 예산편성(복음화 계획서 및 연중계획서)은 담당사제의 사목방침과 공동체 구성원들의 특성에 따라 편성될 수 있다. 단, 예산편성지침서가 제시하는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 ③ 공동체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담당신부 및 각 지역 공동체의 유용 가능한 재정을 “공동체 사목비”라 칭한다.
- ④ “공동체 사목비” 예산은 전년도 공동체 세 가지 수입원 (교무금+주일헌금+PA)의 합산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 ⑤ 수입원 총액의 합산기간은 전년도 9월부터 당해년 8월말까지로 정한다.
- ⑥ 지역 공동체의 재정분과장은 매년 11월 31일까지 내년도 “공동체 사목비 책정”현황을 본당 사무실의 협조를 받는다.
- ⑦ 책정 방식은 경상비(시설임대료, 급여, 수도자 활동비, 공과금, 기타비용 등)를 감안하여 %로 정한다. 비율의 변경은 주임 사제의 권한에 있다.
- ⑧ 한 개인이 특별한 금액을 교무금, 주일헌금, 감사헌금, PA(Project advance)로 봉헌했을 때, 이는 특별기금으로 분류하여 “공동체 사목비”에 포함시키지 않고 주임사제의 방침에 따른다.
- ⑨ “공동체 사목비”는 공동체 특성에 맞게 예산을 책정하되, “부서 및 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편성되어야 하며 본당과 공동체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단, 지역 공동체의 특성과 담당사제의 사목적 판단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
- ⑩ “공동체 사목비” 예산은 전년도 공동체 회계기준 (교무금+주일헌금+PA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 2018 년 공동체 예산 관리 일반 지침

- ① 지역 공동체의 예산편성은 본 지침서를 따른다.
- ② 지역 공동체 "복음화 계획서 및 연중계획서"는 지역공동체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작성하되, "공동체 사목비"와 자체 금액으로 편성한다.
- ③ 공동체 특성에 따른 행사기획(EX-베드로 프렙캠프, 바오로 청년피정)은 본당 단체와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기획되어야 하며, 이는 공동체 사목비와 자체경비로 운영한다.
- ④ "예산편성 특임위"의 재정분석을 통하여 2018년도 "공동체 사목비"는 교무금+주일 헌금+PA 총액의 10%로 상정한다. (2016년 9월~2017년 8월 까지 수입원 총액의 10%는 베드로 공동체 \$15,243.90 / 바오로 공동체 \$21,750.80)
- ⑤ 본당과 공동체의 재정적 연대성을 위하여 "공동체 사목비" 이외에 본당에서 지원받는 예산은 야외미사(연1회), 송년회(2년1회) 개최 시 시설임대료에 한한다.
- ⑥ 기타 예산편성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예산집행은 주임사제(담당사제)의 승인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부서 및 단체 예산편성지침 (지역 공동체 포함)

가. 사목회 (제 단체가 없는 부서)

- ① 사목회 운영과 교육을 위한 비용은 본당지원으로 예산편성 가능하다. 단, 사목회 임원들이 자체회비를 마련하여 운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 ② 사목회의 또는 워크샵과 관련한 예산은 자체회비로 편성하되, 부족분에 대하여 주임사제(담당사제)의 지도에 따라 본당/지역 공동체에서 지원한다.
- ③ 사목회의 정기적인 행사 외의 특별한 행사의 경우(ex-주교님 방문 식수) 주임사제의 지도에 따라 본당지원으로 예산 편성할 수 있다.
- ④ 교육기자재 및 홍보물 관리, 인쇄, Project Advance 관련 작업, 기타 제반 기기 구입은 비품계정을 참조하여 본당지원이 가능하며, 가급적 기부 또는 찬조 형식을 고려한다.
- ⑤ 연간계획서에 준하여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 사항은 주임사제의 지도에 따라 본당지원이 가능하다.

나. 구역부

- ① 구역장, 선교장들을 위한 교구 및 본당차원의 교육, 피정, 소공동체 활성화와 본당 공동체 전체를 위한 직무 교육비는 본당/지역 공동체지원으로 편성한다.
- ② 구역장, 선교장을 위한 친교행사는 연1회 주임사제의 판단에 따라 자체 회비와 본당/지역 공동체지원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 ③ 구역부의 음식세일 판매 이익금은 구역별, 반별 야외행사 및 친교행사에 사용 되어질 수 있다.
- ④ 구역별 판매이익금(70%)에 대한 조정은 주임사제에게 있다.
- ⑤ 월 1회 구역 미사가 실시되는 아보츠보드 구역에 대해 성당 대여료를 지원한다.

다. 선교부

- ① 새신자 모집(선교운동) 및 냉담자 회두, 외딴교우를 위한 행사는 본당/지역공동체에서 지원한다.
- ② 예비자들에 대한 피정, 선교지원비는 50% 본당/지역공동체 예산으로 편성 가능하다.
- ③ 예비자 교리와 관련한 봉사자의 교보재 및 교육비는 본당/지역공동체에서 지원한다.
- ④ 함께하는 여정 봉사자들에 대한 예비자 교리에 관한 교육 및 피정은 일부 또는 전부를 본당/지역 공동체에서 지원한다.
- ⑤ 천주교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은 본당/지역공동체에서 지원한다.
- ⑥ 세례, 견진 등과 같은 전례행사와 행사 후 진행되는 축하식, 리셉션 비용은 본당지원으로 예산 편성한다.

라. 신심단체부

- ① 본당에서 이루어지는 신심단체의 각종 피정 및 교육비용은 자체회비로 예산편성하되, 부족분에 대하여 주임사제의 지침에 따라 본당지원이 가능하다.
- ② 예산편성 책정 기준에 따라 본당 이외의 장소에서 교육이나 피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개인 영성 생활의 이익을 위한 외부교육 참가비는 자체적으로 조달하며,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한 외부교육 참가비는 본당 예산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초청강사에 대한 비용은 예산편성 책정 일반 지침 기준에 따른다.
- ④ ME, 꾸르실료, 초이스, KC와 같은 액션단체들의 활동은 행사기획에 필요한 제반 비용들을 주임사제(담당사제)와 상의하여 본당지원 예산액을 상정한다. 단, 예산편성 지침의 일반지침과 편성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친교, 식대등)

마. 전례부

- ① 전례에 필요한 공용품은 본당/지역공동체에서 지원하고, 개인용품은 자체 조달한다.
- ② 전례에 필요한 전례용품 및 제구 등은 예산 신청 후 후원과 특별찬조금을 통해 구입하며, 부족한 비용은 본당/지역공동체 지원으로 처리한다.
- ③ 전례에 관련한 음향기기(오르간, 마이크, 앰프등)는 주임사제(담당사제)의 판단에 따라 본당/지역공동체에서 지원 한다. 단, 가급적 회원들의 후원과 찬조를 적극 추진한다.
- ④ 제대회 운영비용은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 그리고 기타 사업비 등을 수입으로 하여 운영한다.
- ⑤ 전례부 각 단체의 피정과 교육은 주임사제(담당사제)의 지도에 따라 행사기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⑥ 전례시기 변경에 따른 필요 경비는 본당/지역공동체에서 지원한다.
- ⑦ 성탄과 부활 전례와 관련한 제반 비용은 본당/지역공동체에서 일부 지원 한다.
- ⑧ 봉사자들(지휘자, 반주자)의 활동비는 주임사제의 지도에 따라 결정하며, 성음악등 관련 활동 또는 연구비로 이용한다.

바. 여성부 (성모회)

- ① 성당 친교실 주방 비품은 성모회 자체수입으로 편성하되, 부족분은 본당에서 지원한다.
- ② 성모회의 음식판매 이익금은 본당 및 공동체를 위한 행사와 성모회 운영을 위해 예산 편성한다.
- ③ 야유회 및 친교행사는 예산편성 일반지침에 따라 자체회비로 예산 편성한다.

사. 청소년부

- ① 주일학교(BASIC, PREP) 예산의 수입은 주일학교 등록비와 찬조금, 수익사업, 본당에서 지원하는 운영비로 예산 편성한다.

- ② 주일학교 등록비는 수입으로 표기하여 예산 편성한다.
- ③ 주일학교 학생들의 등록비는 전액 주일학교와 관련된 교보재, 교육비등으로 사용하
되, 구체적인 용도는 지도신부가 결정한다.
- ④ 교사들의 교육 및 피정에 관한 비용은 본당에서 지원한다. **그밖에 교사에 관한 본당
지원은 지도신부의 승인을 받아 본당지원의 범위를 결정한다.**
- ⑤ 교사들의 교육 및 피정 외에 이루어지는 워크숍, 친교 행사는 지도사제와의 지도아
래 계획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본당지원의 범위를 결정한다. 단, 자체회비와 본당지
원의 비율은 주임사제의 결정에 따른다.
- ⑥ 교사 회의를 위한 간식비 지원은 본당/**지역 공동체** 지원으로 예산 편성 가능하다. 단,
과도한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 신부의 승인을 받는다.
- ⑦ 주일학교 학생들의 간식비는 등록비와 본당/**지역 공동체** 지원 및 후원금으로 예산
편성한다. 과도한 간식비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 신부의 승인을 받는다.
- ⑧ 학생들의 여름캠프, 겨울피정과 같은 행사 시 자체회비의 부족분은 본당/지역 공동
체 지원으로 예산 편성한다. 단, 참가비 결정 등 관련 비용 계획은 지도신부 및 청소
년 부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또한, 행사 진행 사항에 대해 사무실의 행정지원을 받
는다.
- ⑨ 크리스마스 파티, 은총축제, 스키트립 등과 같은 연중행사의 경우 자체경비, 후원금
등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부족분 발생시 주임사제(담당사제)의 승인을 통해 본당/지
역 공동체에서 지원한다. (단, 스키트립이나 캠프등 예약을 위하여 Deposit을 보내야
할 경우, 담당 코디들은 **부장/분과장**과 상의하고 성당 체크로 계약할 수 있도록 미
리 미리 확인한다.)
- ⑩ 세례, 첫 영성체, 견진 등과 같은 전례행사는 본당지원으로 예산편성 가능하며, 행사
후 진행되는 축하식, 리셉션 비용은 주일학교 등록비, 후원금과 **본당지원으로** 예산
편성한다.
- ⑪ 코디네이터의 활동비는 주임사제의 지도에 따른다.

아. 청년부

- ① 청년회원들을 위한 여름, 겨울 행사 및 피정은 지도신부의 지도아래 계획되고, 이에 대한 경비는 자체회비와 후원금, 본당/지역공동체 지원의 일부로 예산을 편성한다.
- ② 청년 전례와 관련한 비용들은 본당/지역 공동체 지원으로 예산 편성한다.
- ③ 청년 임원들의 워크숍, 친교 행사는 지도사제와의 지도아래 계획되어야 하며, 자체회비의 부족분을 본당/지역공동체 지원으로 예산편성 가능하나, 담당신부의 지도에 따른다.
- ④ 초이스, 말씀봉사와 같은 청년단체는 예산편성 책정기준과 신심단체 예산지침을 따른다.
- ⑤ 청년회 산하의 각 단체별 친교행사는 자체회비로 예산 편성한다.

자. 시니어 사목부

- ① 시니어 아카데미 등록비와 판매 수입금은 시니어 프로그램 운영의 수입으로 표기하여 예산편성 한다.
- ② 시니어 아카데미 운영은 주임사제의 방침에 준하여 시행하며, 재정운영 역시 시니어 아카데미 세칙을 따른다.
- ③ 요셉회 식대 지원은 자체회비와 후원금으로 예산편성하며, 그밖의 요셉회 활동(교육 및 피정)과 관련하여 주임신부(담당신부)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차. 사회복지부

- ① 사회복지 운영에 관한 예산은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을 그 수입으로 하며, 그 용도는 주임사제의 지도에 따른다.
- ② 사회복지부의 교육 및 피정은 주임사제의 지도아래 자체회비와 본당지원으로 예산 편성한다.
- ③ 사회복지 활동과 관련한 비용은 사회복지부 수입비용으로 우선 편성한다.

카. 기타

- ①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신생단체 및 연합회 형식의 단체들은 주임사제의 지도에 따른다.
- ② 주임사제(담당사제)의 지도 방침에 따라 특별 예산이 지원될 수 있다.
- ③ UBC 카톨릭 학생회(유캐한)은 바오로 공동체 소속으로 하되 지도 사제의 관리하에 본당 예산으로 지원한다.

2017 년 11 월



주임사제 신현만 시몬